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기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3

발의연월일: 2024. 6. 26.

발 의 자:홍기원·복기왕·주철현

박희승 · 송옥주 · 양부남

윤종군 • 박상혁 • 문진석

한준호 · 김병기 · 허 영

문금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주택법」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,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현행 「소득세법」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이와 같은 각 지역이나 지구로 지정되면 금융 및 대출 규제, 세금 중과,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가해지나, 규제지역별 지정효과가 혼재, 중복 그리고 파편화되어 있어 국민 불편 및 혼란이 가중되고 각 규제 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실효성도 낮은 상황임.

이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「주택법」상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, 「주택법」상 투기과열지구와 「소득세

법」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·통합하고, 이와 연계하여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(종전의 조정대상지역)에 부과되던 양 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 적용 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4조 및 제104조의2 삭제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970호) 및 「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97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4조제4항제3호 본문 중 "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"을 "「주택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(이하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라 한다)"로 하고, 같은 호 단서 중 "지정지역"을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 한다.

제104조제7항제1호 중 "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"을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본문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"조정대상지역"을 각각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"로 한다. 제104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적용례)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양도소득세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양도한 분

에 대하여는 제10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②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③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4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⑥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⑦ 법률 제20235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

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호를 삭제한다.

⑧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⑨ 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투기과열지구를, 기획재정부장관은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각각"을 "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획재정부장관"을 "국토교통부장관"으로, "구역·지구·지역"을 각각 "구역·지역"으로 한다.

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3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중 "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"을 "「주택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는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"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"을 "「주택법」 제6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를"로 한다.

- ④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- 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9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- ⑥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®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4조(양도소득세의 세율) ①	제104조(양도소득세의 세율) ①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	
경우 제55조제1항[제3호(같은	
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	
함한다)의 경우에는 제1항제8	
호]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	
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. 이	,
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	
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	
1항[제3호(같은 호 단서에 해당	
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경우	
에는 제1항제8호]에 따른 세율	
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	
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	
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	
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	
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	
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	
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</u>	3. 「주택법」 제63조제1항에

4. (생략)

- ⑤・⑥ (생략)
-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이에 딸린 토지 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(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 분의 30)을 더한 세율을 적용 한다.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 0분의 20(제3호 및 제4호의 경 우 100분의 30)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 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

<u>ME 10000777 2071</u>
(이하 "부동산관리지역 2단
<u>계"라 한다)</u>
<u>부동산관리지역 2</u>
단계
<u>.</u>
4. (현행과 같음)
⑤·⑥ (현행과 같음)
⑦
·

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 다.

- 1. 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(이하 이 조에서 "조정대상지 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
- 2. <u>조정대상지역</u>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.
- 3. <u>조정대상지역</u>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
- 4.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.

⑧ (생 략)

1. <u>부동산관리지역 2단계</u>
2. <u>부동산관리지역 2단계</u>
 4. <u>부동산관리지역 2단계</u>
 ⑧ (현행과 같음)

제104조의2(지정지역의 운영) ① 〈삭 제〉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 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 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 상 승률 등을 고려할 때 그 지역 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 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지역을 지 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-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"지 정지역에 있는 부동산"이란 제 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동산을 말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에 부동산 가격안정 심 의위원회를 둔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해 제의 기준 및 방법과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